[서식 예] 양수금청구의 소(채권일부 양수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양수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건축자재공급업자인 소외 ◈◆◈가 사업운영자금이 필요 하다고 하여 소외 ◈◈◈에게 금 30,000,000원을 차용증서를 교부받고 변제기일 은 따로 정함 없이 원고가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 이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원고는 지난 20○○. ○. ○. 뜻하지 않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 사고를 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소외 ◈◆◈에게 대 여금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, 소외 ◈◆◈는 판매한 건축자재대금이 회 수가 되지 않고 있어 당장은 변제할 수 없으니 차라리 건축업자이고 변제자력 이 충분한 피고에게 소외 ◈◆◈가 각종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가지고 있는 금

1억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이 사건 청구금액인 금 30,000,000원에 대해 이 등 장 것이니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아 가라고 하고 원고도 등의하자 소외 ◈ ◈ 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원의 물품대금청구 채권 중 일부인 금 30,000,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에게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, 위 통지서는 20○○. ○. ○○.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.

- 3.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 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1. 갑 제2호증채권양도양수통지서1. 갑 제3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 위 원고 000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			Sorkil (1)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, MANA) NA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 기 타	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 말한다 할 것이고, 채권양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 '확정일자'란 증서에 대하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경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취득한다(대법원 2010. 5.1 ·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종 성일자에 해당한다고 봄(되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채무사정이 없는 한 채무먼제에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대의 있으면 바로원래의 해당한다고 보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여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양도의 전 생물하는 것이고 함께 권하는 것이고 함께 권하고 함께 권하는 것이고 함께 권하고 함께 건 함께	나는 2주 이내(19 양도인과 신 채권 양도인과 신 채권 부터 후자에게로 여름 도에 의하여 채권 등에 의하여 채권 등에 되는 지하여 제 등지 하는 지수 이 등이 제 3자에 대한 대한 의 기고, 지분권자로부터 등을 받은 사안에 대한 민대법원 2010. 5.13 본원제와 관련하여 대한 무실을 갖추어 대신을 가나다.이 경우 대신의 존재에 대해 등 특별한 사정이 등 특별한 사정이 되었다.	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 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 서,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 법 부칙(1958.2.22.)제3조 제4항의 확 . 선고 2010다8310 판결).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를 것은 아니어서,그 경우 채권양도만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 채무자가 면책된다. 채무자가 채권자 排무자가 면책된다. 채무자가 채권자 排무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 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라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